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2017. 8. 18.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차 례

서 문

제Ⅰ장 일반적인 규범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역할과 책임
제4조 거래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규범의 준수 의무 및 위반행위 처리
제6조 대고객 외환딜링거래
제7조 딜링룸 보안
제8조 비상대책
제9조 리스크관리
제10조 시장참여자간 또는 외환당국간의 관계유지
제11조 회계처리와 감사

제Ⅱ장 윤리에 관한 규범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 브로커를 통한 거래와 관련된 비밀의 유지
제14조 허위정보나 소문의 유포행위 금지
제15조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의 제한
제16조 내부고발
제17조 인격존중
제18조 신원이 불명확한 거래당사자와의 거래
제19조 사기 등 형사관련 범죄행위의 방지
제20조 자금세탁 거래의 방지
제21조 향응 및 선물의 수수
제22조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제23조 약물,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의 남용 금지

제Ⅲ장 거래원칙에 관한 규범

제24조 거래 권한의 부여
제25조 거래조건 등의 문서화
제26조 선행조건의 사전고지
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
제28조 거래대화내용의 녹음
제29조 거래중개
제30조 거래상대방 이름의 공개
제31조 거래당사자 교체
제32조 스터핑(stuffing)
제33조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거래
제34조 거래 실수 대응
제35조 손절매 주문 및 포지션 파킹
제36조 정확한 거래 용어의 사용
제37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원칙

제Ⅳ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

제38조 거래시간
제39조 정규시간 또는 지정된 장소외 거래
제40조 가격제시 등 거래주문
제41조 거래체결
제42조 거래확인
제43조 표준결제일
제44조 임시휴일
제45조 지급결제
제46조 지원부서(back office)의 분리
제47조 서울외환시장에서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화자금거래
제48조 국제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 등의 준용

부 칙

<부 록> 1. 용어 정의
2. 전자중개방식의 외환거래규약
3. 외환거래 중재위원회 운영요령

서 문

이 규범은 서울외환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외국환은행의 딜러, 중개회사의 브로커, 외환당국의 실무진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요 국제금융시장의 표준적인 거래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범의 목적은 외국환은행, 중개회사는 물론 이들 회사에 소속되어 외환거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거래원칙과 최선의 관행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외환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관행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외국환은행의 딜러와 중개회사의 브로커는 이 규범을 통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와 브로커들이 이 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지침들은 현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물론 앞으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 그리고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와 브로커들은 이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관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거래행위와 시장관행의 다양한 면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포괄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범의 기존정신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준(글로벌 행동 규범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제 I 장 일반적인 규범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거래행위의 기준을 확립하고 전문가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시장참가자들간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관행에 관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포함) 등 주요 시장참가자와 중개회사는 물론 이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거래담당자는 현물환, 선물환, 외화자금거래, 스왑, 옵션 등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수행할 경우 이 규범의 내용 및 기본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역할과 책임

1.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회사 자체는 물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래담당자들이 이 규범의 내용에 부응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서울외환시장이 높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래담당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의 거래 활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딜러와 브로커 및 지원부서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4.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가 시장관행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행위가 자신은 물론 회사의 책임임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는 딜러로 하여금 자신의 훈련이나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브로커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며, 브로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5.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딜러와 브로커들이 이 규범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6.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딜러 또는 브로커의 전직과 관련하여 다른 외국환은행이나 중개회사로부터 전직 대상자의 품행, 업적, 사고경력 등 인적 정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다른 외국환은행 또는 중개회사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거래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1. 딜러와 브로커는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나 고객에 대하여 자기가 소속한 회사의 업무내용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2. 딜러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해서는 안되며,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2017. 8. 18. 신설)

3. 딜러와 브로커는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관리자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를 수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나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딜러와 브로커는 거래체결 전에 개별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거래활동에 관한 비밀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딜러들은 거래시 국제거래관행을 존중하고 거래의 신뢰성 확보 및 기업의 투기적 거래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2007. 9. 18. 개정)

6. 브로커는 고객과 중개회사간에 별도의 중개계약이 있더라도 특정 고객이 부당하게 유리하도록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규범의 준수 의무 및 위반행위 처리

1. 외환시장에서의 거래행위가 최대한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은 이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이 규범의 내용 또는 기본정신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당사자와 상호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이 규범을 위반한 외국환은행이나 중개회사는 위반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규범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위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7. 8. 18. 신설)

5. 딜러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의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환거래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2007. 9. 18. 개정)

제6조 대고객 외환딜링 거래(2007. 9. 18. 제정)

1. 딜러는 고객거래주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접수 관리한다.

2. 기업담당 딜러와 은행간 딜러는 구분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업담당 딜러는 전화녹취, 문서, 기타 형태로 주문 접수를 기록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은행내 고객(기업)담당 파트(딜러)와 공유할 수 있는 은행간 거래정보 공유범위는 '현재 거래가격(시세)', '고객 주문내역', '체결내역'으로 제한한다. (2013. 12. 4. 개정)

제7조 딜링룸 보안(2007. 9. 18. 제정)

1.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딜링룸에 대한 접근권한 등을 포함하는 엄격한 보안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통제에는 관련 전산시스템과 기밀정보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나 외부인들의 딜링룸 출입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2. 관리자는 고객이 딜링룸을 방문할 경우 비밀관리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예약에 의하며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거래담당자가 딜링룸을 방문하여 자기회사를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비상대책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거래실행부서(front office), 리스크관리부서(middle office) 및 지원부서(back office)의 비상대책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천재지변, 테러, 파업 등 비상상황에도 거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충실히 보완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제9조 리스크관리

1. 외국환은행과 거래담당자는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거래리스크는 물론 회계 및 조세처리 등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은 구체적인 업무분장이나 기능의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자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고객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객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장참여자간 또는 외환당국과의 관계유지(2007. 9. 18. 제정)

시장참여자간, 혹은 당국과 시장참여자간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의견교환은 필요하나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참여자간의 관계는 신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처리와 감사

1.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통화, 금액, 가격, 거래일, 결제일 등에 관한 일상적인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 및 거래담당자는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내·외부 감사 및 관리자가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제Ⅱ장 윤리에 관한 규범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1. 비밀의 유지와 고객의 익명성 보장은 외환시장의 거래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딜러는 자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고객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와 거래정보 등 관련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7. 8. 18. 개정)

2. 거래정보란 딜러와 고객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 또는 포지션과 관련된 정보로서, 거래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만들어지는 정보를 말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고객(세일즈)의 주문 관련 세부사항
   - 고객(세일즈)물량 처리 가격(2017. 8. 18. 신설)

3.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에 대하여 비밀의 식별과 처리에 관한 적절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거래담당자들이 비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브로커를 통한 거래와 관련된 비밀의 유지

1. 딜러와 브로커는 비밀 유지를 위해 공동 책임을 진다. 브로커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신원 공개에 관한 허락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딜러는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항시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브로커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거래당사자나 거래상대방의 이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브로커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체결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3. 딜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득, 협박 또는 대가 지불 약속 등을 통해 브로커로 하여금 비밀 정보를 누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딜러나 브로커가 상대방의 딜링룸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기회사 및 상대방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며, 딜러는 중개회사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 9. 18. 개정)

5. 브로커는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가격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 9. 18. 제정)

제14조 허위정보나 소문의 유포행위 금지

1. 딜러와 브로커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되며,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거론할 때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2. 시장참가자들은 공적기관이나 다른 시장참가자에 대하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정보나 편파적인 정보를 고객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장참가자는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언론과 접촉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2007. 9. 18. 제정)

제15조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의 제한

1. 딜러는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딜러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사적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내부고발(2007. 9. 18. 제정)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간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사고가 확대 진행되지 않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인격존중(2007. 9. 18. 제정)

시장참여자는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별, 인종, 나이, 결혼여부, 종교, 장애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수치심이나 위협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신원이 불명확한 거래당사자와의 거래

1. 딜러는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2.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신용위험,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거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기 등 형사관련 범죄행위의 방지

1. 외환시장 참가자는 사기 등 범죄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2007. 9. 18. 제정)
   - 녹음이 되지 않는 전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결제지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자금 수취인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
   - 거래체결 후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딜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딜러나 브로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딜러나 브로커가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금 세탁 거래의 방지

1. 외국환은행은 거래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고객과의 거래가 자금 세탁 및 Terrorist Financing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2. 딜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할 경우 내부감사 담당자 및 자금세탁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개회사는 소속직원들이 자금 세탁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중개되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 향응 및 선물의 수수

1. 외환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딜러, 브로커 및 고객간의 지나친 향응제공이나 선물의 수수는 지양되어야 한다.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향응제공 및 선물 수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담당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거래담당자들로부터 향응과 선물의 내용, 빈도 및 금액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점검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들이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나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개회사의 관리자에게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1. 외환시장 참가자간의 도박, 내기 등 사행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이나 중개회사의 딜링룸내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약물,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의 남용 금지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약물,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증상과 그 폐해에 대하여 거래담당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중독성 물질의 남용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거래담당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Ⅲ장 거래원칙에 관한 규범

제24조 거래 권한의 부여

1.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거래실행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지원부서 담당자의 거래권한 및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2. 관리자가 거래담당자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 보고절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거래지침
   - 거래권한 위임 대상자 및 거래 허용 상품
   - 포지션 한도, 손절매 한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 한도 등
   - 거래확인 및 결제절차
   - 거래상대방(중개회사, 외국환은행 등)과의 관계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 거래조건 등의 문서화

1. 거래당사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거래 상품 등 거래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거래 성립 후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조건 등의 문서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6조 선행조건의 사전고지

딜러와 브로커는 거래 체결에 필요한 선행조건(qualifying condition)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2007. 9. 18. 개정)

1. 전자통신망, 전자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거래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래참가자는 반드시 자신의 패스워드를 사용할 것
   - 거래용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개별 패스워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 거래참가자는 최신의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외부정보에 접속할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담당자의 교육 훈련,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은 전자거래시스템을 내부통제시스템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신용 및 여타 리스크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거래대화내용의 녹음

1.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녹취장치를 사용하여 거래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녹취장치를 처음 설치하거나 새로운 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할 경우, 이들에게 대화의 내용이 녹음됨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3. 거래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등은 사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4. 분쟁이 발생한 거래의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등은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제29조 거래중개

1.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딜러와 브로커간의 관계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거래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거래 담당자들이 딜러와

브로커간의 관계에 대한 내부방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소속 딜러의 브로커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거래가 특정 브로커에 부당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브로커로 하여금 모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브로커는 고객으로부터 제시받은 가격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거래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행하거나, 딜러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확정가격(firm price)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 9. 18. 개정)

제30조 거래상대방 이름의 공개

1. 브로커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를 체결할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거래상대방의 이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거래당사자와 브로커는 제3자에 대하여 세부 거래내역을 항시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딜러는 거래를 기피하고 싶은 상대방이 있을 경우 이를 브로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브로커는 고객의 이익과 지시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브로커가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양 당사자에 공개할 때에는 가급적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공

개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일방이 다른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할 경우 브로커는 거절한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거래당사자 교체

1.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신용한도부족 등으로 거래 성립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격한 거래당사자를 제3자로 교체할 수 있다.

2. 거래상대방이 교체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세부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일반적인 거래 지침과 절차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브로커의 중개편의를 위해, 거래를 기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명단을 중개회사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딜러는 거래상대방 교체와 관련하여 브로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32조 스터핑*(stuffing)

* 중개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래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1.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는 '스터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소속직원들이 행동 규범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스

터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스터핑'이 발생할 경우 딜러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개회사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스터핑'이 발생한 경우 중개회사는 관련 외국환은행과 접촉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중개회사는 외국환은행이 요청할 경우 협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련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스터핑' 발생시 중개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시장가격으로 필요한 거래를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스터핑'에 관련된 딜러는 당초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딜러와 브로커는 '스터핑' 발생 당일에 관련 당사자의 이름, 발생 사유, 손익 규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스터핑' 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스터핑' 발생에 따른 차액정산내용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차액정산이 지나치게 빈번히 발생하거나 누적 정산규모가 과도한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거래

1. 거래시점의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손익 은폐, 사기, 부당한 신용한도 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거래시점의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관리자는 은행의 방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거래 실수 대응 (2013. 12. 4. 제정)

1. 거래가 현재 시장가격과 현저히 괴리되어 체결된 경우 시장참가자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장참가자들은 한번 실행된 거래가 다른 거래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 거래의 조정이나 취소가 다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 거래 취소는 현재 시장가격과 명백하게 괴리되어 체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시장가격과 명백하게 괴리되어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딜러 또는 브로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3. 시장참가자는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거나 취소를 요청 받은 경우 항상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제35조 손절매 주문 및 포지션 파킹

1. 손절매 주문을 내거나 받는 거래당사자들은 쌍방이 손절매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손절매 주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손절매를 주문한 당사자와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딜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지션 및 손실을 파킹(parking)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 9. 18. 개정)

제36조 정확한 거래 용어의 사용

1.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소속직원들이 이 규범의 부록에 예시되어 있는 정확한 거래용어를 사용하는 등 항상 전문가답게 거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는 다수의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외환시장간 이동이 빈번한 딜러 및 브로커로 하여금 각각의 외환시장에서 사용되는 거래용어의 차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관리자는 필요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원칙

1. 서울외환시장에서의 외국환은행간 외환거래는 중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2007. 9. 18. 개정)

2. 외국환은행이 중개회사를 통하여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은행과 중개회사간 설치된 전화 또는 전용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3. 외국환은행은 중개회사에 거래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거래원만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제Ⅳ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

제38조 거래시간

1. 국제 외환시장의 공식적인 거래시간은 시드니 시간 월요일 오전 5시로부터 뉴욕 시간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다.

2. 1항의 공식거래시간 외에 체결된 거래는 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3.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한다.(2003. 11. 18, 2005. 1. 19, 2007. 9. 18, 2017. 8. 18. 개정)

제39조 정규시간 또는 지정된 장소외 거래

1. 정규거래시간이 아니거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이동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며 모든 공식적인 거래는 딜링룸의 녹취되는 전화기를 사용하여야한다. 단, 관리자의 사전승인이 있거나 재난이나 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7. 9. 18. 개정)

2. 외국환은행의 관리자는 정규시간이 아니거나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거래할 수 있는 딜러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러한 거래에 대한 신속한 보고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제40조 가격제시 등 거래주문

1. 모든 시장참가자는 그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확정가격(firm price)인지 또는 참고가격(indicative price)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브로커에 의해 고시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금액에 대한 확정가격으로 간주된다. (2007. 9. 18, 2013. 12. 4 개정)

2. 거래당사자가 확정가격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그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의무가 있다.

3. 브로커는 딜러가 제시한 확정가격이 시간이 경과하거나 시장 상황이 변동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의 최저금액은 서울외환시장협의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5. 5. 21, 2007. 9. 18. 개정)

제41조 거래체결

1. 거래당사자는 가격 등 주요한 거래조건들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래를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외환거래에 관한 구두합의는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은 거래조건을 협의할 경우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브로커는 거래가격을 제시한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거래체결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42조 거래확인

1. 외국환은행은 외환거래 체결 후 지체없이 전화 또는 SWIFT 등 인가된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및 중개회사와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2. 지원부서(back office)는 접수된 거래확인서를 즉시 점검하여, 당초 거래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외국환 은행간에 표준결제지시서(SSI)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결제지시서에는 개별상품, 개별통화별 결제정보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2007. 9. 18. 개정)

제43조 표준결제일

1.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서울외환시장의 영업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제일이 거래상대통화국 외환시장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양 시장이 동시에 개장하는 첫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2. 원화가 개재되지 않은 이종통화간 거래의 경우 1항의 원칙에 따라 결제일을 정한다.

제44조 임시휴일

외환거래의 결제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될 경우 새로운 결제일은 임시휴일 다음 첫 영업일로 한다. 다만, 임시휴일 다음 첫 영업일이 익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시휴일 직전 영업일을 새로운 결제일로 한다.

제45조 지급결제

1. 외환거래에 따른 지급결제 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지급결제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결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은행 참가기관이 CLS 이외의 수단으로 결제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2007. 9. 18. 개정)

3. 원화의 결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이용하거나 수표 교환 등에 의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2007. 9. 18. 개정)

제46조 지원부서(back office)의 분리

1. 외국환은행은 거래실행부서(front office)와 리스크관리부서(middle office), 지원부서(back office)의 담당업무 및 보고체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조직을 운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07. 9. 18. 개정)

2. 거래실행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지원부서의 사무실은 서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7. 9. 18. 개정)

제47조 서울외환시장에서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화자금거래

1. 외화자금거래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거래종류는 Overnight(O/N), Tomorrow Next(T/N), Spot Next(S/N), Week, Month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인도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익익영업일(Value Spot)로 한다. 다만, Overnight(O/N)는 계약체결 당일, Tomorrow Next(T/N)는 계약체결 익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3.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1년을 360일로 하며, 이자율은 연리(年利)로 표시하고 최소단위는 1/32%를 원칙으로 한다.

4. 만기일은 인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정하되, 만기일이 해당 통화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새로운 만기일로 한다.

제48조 국제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 등의 준용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국제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표준계약 등 시장관행에 준하여 거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범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은행간 외환거래 지침』(1989년 12월 1일,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8.)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8.)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용어 정의**

PART Ⅰ :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서의 거래 용어

(다만, *표시는 외환시장에서만 사용)

Mine, I buy*, I take:

외환시장 : 제시된 환율(offered rate)로 대상통화(Basic currency)를 매수하겠다는 의사 표시

(다만, 스왑거래에서는 현물환 매도/선물환 매수)

외화자금시장 : 제시된 금리(offered rate)로 차입하겠다는 의사 표시

Yours, I sell*, I give:

외환시장 : 제시된 환율(bid rate)로 대상 통화를 매도하겠다는 의사 표시

(다만, 스왑거래에서는 현물환 매수/선물환 매도)

외화자금시장 : 제시된 금리(bid rate)로 자금을 공여하겠다는 의사 표시

Given:

bid에 대해 offer가 제시되어 거래가 성립되는 것

Taken:

offer에 대해 bid가 제시되어 거래가 성립되는 것

Join.. at, Support at:

브로커가 고시한 bid/offer rate에 추가 주문을 내겠다는 의사 표시

** ACI 표준행동규범 (Chapter XI Market Terminology) 참조

Off:

기존의 bid/offer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

Bid, Buy*, Pay:

외환시장 : 대상통화의 매수
(다만, 스왑거래에서는 현물환 매도/선물환 매수)
외화자금시장 : 차입

Sell*, Offer:

외환시장 : 대상통화의 매도
(다만, 스왑거래에서는 현물환 매수/선물환 매도)
외화자금시장 : 자금 공여

Under reference:

거래의 성립에 앞서 고시된 rate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Either way, Choice, Your choice:

bid 및 offer rate가 같음

Done: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의사 표시

Firm, Firm price:

확정 가격

For indication, Indication, For information, For level:

참고 가격

Checking:

신용한도의 확인

Your risk:

제시한 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희망 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의사 표시

My risk:

제시받은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겠다는 의사 표시

Points: pips*:

환율의 최소 고시 단위
일반적으로

USD/JPY	$1/100^{th}$ of a Yen
EUR/USD	$1/100^{th}$ of a U.S. Cent
GBP/USD	$1/100^{th}$ of a U.S. Cent
USD/CHF	$1/100^{th}$ of a Swiss Centime (Rappen)

Basis points:

이자율 표시 단위로 1%의 1/100

Premium:

현물환가격과 선물환가격의 차이(선물환가격 > 현물환가격)

Discount:

현물환가격과 선물환가격의 차이(선물환가격 < 현물환가격)

Par:

현물환가격과 선물환가격의 차이(선물환가격 = 현물환가격)

Outright price:

현물가격을 스왑포인트(premium 또는 discount)로 조정한 가격

PART Ⅱ : 거래기간, 인도일, 만기일에 관한 용어

Spot:

일반적으로 오늘(today)로부터 2영업일(banking days)후

Regular dates/periods, Fixed dates:

일반적으로 Spot date로부터 1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경우에 따라 국내 자금시장에서는 today로부터)

IMM dates: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의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Division)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선물 계약의 최종결제일로 3월, 6월, 9월, 12월의 제3수요일

Odd/broken/cock dates:

Regular date 이외의 기일물

Short dates:

1개월 미만 만기

Overnight O/N:

거래당일부터 익영업일

Tom-next T/N:

익영업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

Spot-next S/N:

Spot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

One week:

Spot으로부터 1주일

Tom-week, One week over tomorrow:

익영업일로부터 1주일

Turn of the month:

월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익월 첫 영업일

Spot against end month, End of the month:

Spot으로부터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Turn of the year:

연도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익년 첫 영업일

Forward-forward, Fwd/Fwd:

Forward date(spot보다 장기)로부터 다른 forward date

PART Ⅲ : 통화옵션 거래관련 용어

American (style) option:

만기일 이전에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ARO (Average rate option):

행사가격이 특정시점의 기초자산(대상통화) 가격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기초자산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옵션

At-the-money: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과 같거나 매우 근접한 수준에 있는 상태

Buyer (Holder):

premium을 지급하고 옵션을 매수하는 자

Call option:

정해진 기간내에 특정가격으로 일정금액의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ompound:

기존의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옵션 (option on an option)

Cut off time, expiration time:

만기일에 옵션의 행사권리가 소멸되는 시각

Delivery Date:

인도일(통상, 만기일 2영업일 후)

Delta: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옵션가격(premium)의 변동비율(hedge ratio)

Delta hedge:

옵션거래에 따른 잠재적인 외환 포지션(옵션금액 × Delta)을 헤지하기 위한 외환거래

Digital:

현물가격이 콜옵션(풋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을(낮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옵션거래

Double knock-in:

미리 정한 2개의 환율 수준 가운데 어느 하나의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옵션

Double knock-out:

미리 정한 2개의 환율 수준 가운데 어느 하나의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옵션

Double one touch:

미리 정한 2개의 환율 수준 가운데 어느 하나의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European (style) option:

만기일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Exercise:

옵션 매입자의 권리 행사

Expiration date:

옵션 만기일

Historical volatility:

과거 Data로 추정한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Style, 만기일, 행사가격, premium, 금리 등을 옵션 가격결정 모형에 적용하여 산출한 옵션의 (내재)변동성

In-the-money:

기초자산의 가격이 Call 옵션(Put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낮은) 상태

Intrinsic value:

In-the-money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현재가격과 옵션 행사가격간의 차이

Knock-in:

미리 정한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옵션

Knock-out:

미리 정한 환율 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 수준)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옵션

No touch:

미리 정한 환율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기까지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인도일에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One touch:

미리 정한 환율수준(또는 그 이상의 환율수준)으로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Out-of-the-money:

기초자산의 가격이 Call 옵션(Put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은(높은) 상태

Premium, option cost:

옵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가격(premium은 통상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후 수수)

Put option:

정해진 기간내에 특정가격으로 일정금액의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Range binary(Double no touch):

미리 정한 2개의 환율수준보다 낮은 환율수준으로 만기이전까지 현물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일에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거래

Risk reversal:

Call option 매입(매도) 및 Put option매도(매입)의 조합으로, 이 경우 일반적으로 Call 옵션 및 Put 옵션의 명목금액, 만기, Delta의 절대값 및 style 등이 같음

Seller (writer):

premium을 받고 옵션을 매도하는 자

Straddle:

Style, 만기일, 명목금액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Call 옵션과 Put 옵션의 동시 매입 또는 매도

Strangle:

Style, 만기일, 명목금액은 같으나 행사가격이 서로 다른 Call 옵션과 Put 옵션의 동시 매입 또는 매도

Strike price, exercise price:

행사 가격

Synthetic forward:

Style, 만기일, 명목금액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Call 옵션 매입(매도) 및 Put 옵션 매도(매입)의 조합(이 경우 옵션의 행사가격은 선물환가격과 같음)

Time value:

옵션의 시간가치로서, premium에서 intrinsic value를 차감한 값

Volatility:

장외(over-the-count) option 시장에서 사용하는 환율의 표준편차로서 딜러는 미래의 시장가격 변동을 예상하여 volatility rate를 제시함

PART Ⅲ : 금리 파생상품 관련 용어

1. Forward rate agreement (FRA)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계약금리(contract rate)와 만기 결제금리(settlement rate)간의 차액을 수수하는 장외 선도금리 계약

FRA buyer:

만기 결제금리가 계약금리보다 높을(낮을) 경우 FRA매도자로부터(에 대하여) 그 차액을 수취(지급)하는 자

FRA seller:

만기 결제금리가 계약금리보다 높을(낮을) 경우 FRA매수자에 대하여(로부터) 그 차액를 지급(수취)하는 자

2. Interest rate swap (IRS)

명목원금의 수수없이 고정금리에 의한 이자지급 의무와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지급 의무를 상호교환하는 거래

Fixed-rate payer:

고정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변동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자

Floating-rate payer: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고정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자

Currency swap:

두 차입자가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거래

3. Interest rate options

Interest rate cap(금리상한계약) :

계약기간중 이자지급시 시장금리가 계약시 정한 금리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cap매도자가 cap매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경우 cap매도자는 cap매입자로부터 premium 수취)

Interest rate floor(금리하한계약):

계약기간중 이자지급시 시장금리가 계약시 정한 금리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floor매도자가 floor매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Interest rate collar(금리상·하한계약):

금리상한계약을 매입(매도)하는 동시에 금리하한계약을 매도(매입)하는 계약

Zero-cost collar:

Interest rate collar의 일종으로, interest rate cap(floor)의 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premium과 interest rate floor(cap)의 매도로 수취하는 premium이 같은 경우

Swaption:

옵션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interest rate swap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Part Ⅴ : 기타 용어

Cash Settlement

파생상품거래에서 기초자산의 인수도 없이 계약가격과 만기 결제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방법

EURIBOR:

은행간 유로화 기준금리(유로지역 47개국 57개 은행간 패널에서 매일 산출)

LIBOR: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런던 국제금융시장에 소재한 16개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기초로 산출)

LIBID:

런던 은행간 예금금리

NDFs(Non Deliverable Forwards):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는 달리 만기시 당초 약정환율과 만기 결제환율간의 차액을 계약당사자간에 수수하는 선물환 거래

REPOS:

환매 조건으로 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거래

전자중개방식의 외환거래 규약

2002. 10. 11 제정
2007. 9. 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중개방식의 외환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전자중개방식의 외환거래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거래원이 중개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연결된 전용단말기(PC)를 이용하여 직접 거래주문 내역을 입력하면 중개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제3조(주문의 효력) 외국환은행 거래원의 전자중개방식에 의한 주문은 중개회사 중개원과의 전화를 통한 주문과 효력이 동일하다.

제4조(전자중개방식에 의한 거래주문 제한 등) 전자중개방식으로 거래주문을 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중개방식을 이용한 외환거래 주문시 최저주문금액은 미화 1백만달러로 하며, 거래단위는 5십만달러의 배수로 한다.(2007. 9. 18. 개정)

2. 중개회사는 외국환은행의 거래원이 현재의 거래체결가능가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주문을 입력하는 경우 거래원이 거래주문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한 후 중개회사에 자료가 전송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 제Ⅳ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에 따른다.

제5조(신속한 거래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거래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외환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거래의 주문 및 체결내역에 관한 이상 유무는 거래주문 및 거래체결이 이루어진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거래의 주문 및 체결내역을 즉시 확인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이용하여 중개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중개오류(stuffing) 발생시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 제32조 스터핑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중개오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상호연락을 위하여 거래원은 본인의 거래주문이 체결된 후 최소한 5분 동안은 딜링룸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2007. 9. 18. 개정)

4. 중개원을 경유하지 않고 전자중개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나, 전산장애 등으로 거래원이 주문한 내역이 일정기간 경과 후 접수되어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주문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중개수수료) 전자중개방식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전화중개방식의 중개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2. 10. 18.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9. 18.부터 시행한다.

외환거래 중재위원회 운영요령

2006. 5. 16 제정
2007. 9. 18 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규정 제3조 4항 및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제5조 4항에 의거 서울외환시장에서 은행과 기업간에 발생된 외환거래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 9. 18. 개정)

제2조 【기능】 외환거래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은행과 기업간 외환거래 분쟁 발생시 조사 및 중재
2. 중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3. 협의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한 연구 등

제3조 【구성】 ①중재위원회는 분쟁 중재 신청 접수시 당해 사안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설기구로 5명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간사가 임명한다. 다만, 기업체측 위원은 국제금융센터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은행측 위원 2명
2. 기업체측 위원 2명
3. 중개회사 위원 1명

② 중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간사가 간사 1명, 총무 1명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 【간사의 역할】 간사는 중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진행을 담당하며 중재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한다.

제5조 【총무의 역할】 총무는 회의 의사록 작성,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중재기간】 중재기간은 협의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경비】 중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서울외환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은 중재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중재 권고안을 준수하기로 한다.

부 칙(2006. 5. 16.)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8.)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7. 9. 18부터 시행한다.